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3.)
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은승일)

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4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다.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

라. 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

(단위:천원)

연번	구 분	편 성 액			잉여금 (누계)
		계	인건비	운영비	
1	2024 (예정)	1,068,486	753,168	315,318	54,300
2	2023	665,911	543,784	122,127	433,115
3	2022	955,386	608,115	347,271	375,118
4	2021	853,318	522,139	331,179	239,343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■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

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강남복지재단(이하 “복지재단”)의 2024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2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복지재단의 출연근거²⁾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³⁾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, 복지재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.
- 다만, 출연동의안은 출연여부(예산안 편성)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효과성 및 (다른 사업과의) 중복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-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3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강남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
소 관 부 서 : 복지정책과

1. 제안이유

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4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출연개요

가.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다.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

라. 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

(단위:천원)

연번	구 분	편 성 액			잉여금 (누계)
		계	인건비	운영비	
1	2024 (예정)	1,068,486	753,168	315,318	54,300
2	2023	665,911	543,784	122,127	433,115
3	2022	955,386	608,115	347,271	375,118
4	2021	853,318	522,139	331,179	239,343

3. 참고사항

■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

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